

□ 2012 연말 공직기강 및 회계관련 특별점검

- 감사사항 : 연말 공직기강 및 회계관련 특별점검
- 감사기간 : 2012. 11. 01 ~ 12. 07
- 감사과 :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
- 감사결과

| 일련 번호 | 처분요구 종류 | 지 적 내 용 | 조 치 결 과 | 완결 여부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|
| 1 | 개선 | <p><지적내용></p> <p>○ 퇴직금 산정 불합리</p> <p>- 계속 근로년수를 고용된 날로부터 퇴직할 때 까지의 계산을 일할 계산해야 함에도, 1년미만 근속기간은 월할 계산하고, 1월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여 퇴직금 과다 산정</p> <p><조치할 사항></p> <p>○ 퇴직금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일할계산하는 등의 개선 필요</p> | <p>○ 현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은 1년미만 근속기간을 월할계산하고, 1월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. 이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원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. 향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합의 후 개정하도록 하겠음</p> <p>※ 관련근거 : 근로기준법 제94조(규칙의 작성, 변경절차)</p> <p>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| 완료 |
| 2 | 시정 | <p><지적내용></p> <p>○ 국고보조금 집행잔액(22,918천원) 반납 지연</p> <p>- 국고보조금 사업(1건)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기관 별도 통장으로 관리</p> | <p>○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된 사업은</p> <p>- 사업명 : 「2010 한국콘텐츠 아카데미 교육운영」(사업수입)</p> <p>- 사업자 : 한국콘텐츠진흥원</p> | 완료 |

| 일련 번호 | 처분요구 종류 | 지 적 내 용 | 조 치 결 과 | 완결 여부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|
| | | <p><조치할 사항> ○ 국고보조금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 및 정산확정을 통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신속한 반납 조치 필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기간 : 2010.01.01 ~ 2011.03.31 - 사업예산 : 309,000,000원 ○ 정산보고 완료 : 2011.12.14 ○ 정산확정 통보 : 2013.01.02 ○ 정산반납 완료 : 2013.01.18. - 반납금액 : 56,687,51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입이자반납 : 607,810원 · 기타경상이전수입 : 56,079,700원 | |